

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29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1년 6월 7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6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- 가. 제안이유
 - “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”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」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대 상: 대한지적공사앞 및 사러가시장앞 교차로 명칭 개정

제안부서	개 정 안	기존명칭	위 치	비고
교통행정과	윤중중학교앞 교차로	대한지적공사앞 교차로	의사당대로 141 인근	
	신길가마산로 교차로	사러가시장앞 교차로	신길로 155-2	

○ 관련근거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」
※ 2021. 5. 25.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의결(원안가결)

○ 개정사유

- 윤중중학교앞 교차로: 교차로 주변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공공시설물(윤중중학교)로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선정
- 신길가마산로 교차로: 해당 위치의 교차하는 도로명을 조합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선정

○ 개정방법

- 지역사정에 밝고 주 이용자가 되는 교차로 소재지(여의동, 신길4·6동) 주민들의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명칭 개정

3. 집행부 의견

- 기존 교차로 명칭 대상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찾는 구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, 명확한 위치 정보 제공 및 이용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당 교차로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

의 안 번 호	347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6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”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」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대 상: 대한지적공사앞 및 사러가시장앞 교차로 명칭 개정

제안부서	개 정 안	기존명칭	위 치	비고
교통행정과	윤중중학교앞 교차로	대한지적공사앞 교차로	의사당대로 141 인근	
	신길가마산로 교차로	사러가시장앞 교차로	신길로 155-2	

나. 관련근거
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
- ※ 2021. 5. 25.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의결(원안가결)

다. 개 요

- 개정사유
 - 윤중중학교앞 교차로: 교차로 주변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(윤중중학교)로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선정

- 신길가마산로 교차로: 해당 위치의 교차하는 도로명을 조합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 선정
- 개정방법 : 지역사정에 밝고 주 이용자가 되는 교차로 소재지(여의동, 신길4·6동) 주민들의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명칭 개정

라. 상정이유

- 기존 교차로 명칭 대상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찾는 구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, 명확한 위치 정보 제공 및 이용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당 교차로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
마. 위 치 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
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91조(지명의 결정)

- ① 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- 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〈이하 생략〉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3.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

제9조의 2(승인)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